www.nrf.re.kr

2021년도 연구 현장의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

2021.11.

NRF 한국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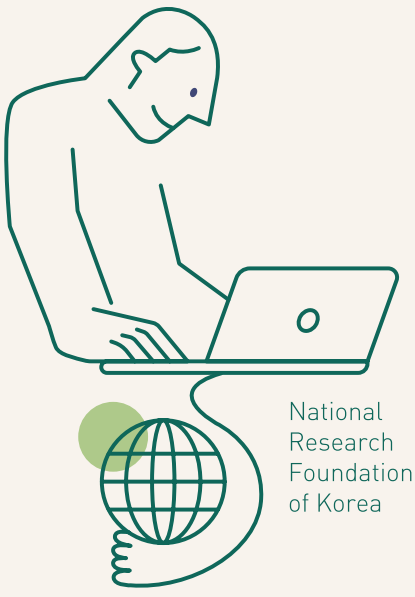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1년도 연구 현장의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

CONTENTS

머리말

제 1 장.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사례 / 7

1. 논문 표절 ····· 8
2. 부당한 저자표시 ····· 12
3. 부당한 중복게재 ····· 14

제 2 장. 유형별 사업비 부정사용 사례 / 17

1. 사업비 횡령, 편취 또는 유용 ····· 18
2. 의도적인 사업비 부정 집행 ····· 19
3. 사업비 유용 및 부정 집행 ····· 21

제 3 장. 기타 연구윤리 위반의 개념 및 사례 / 25

1. 갑질의 개념 및 사례 ····· 26
2. 성비위의 범위 및 사례 ····· 29
3.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개념 및 사례 ····· 31
4. 성비위, 갑질 교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32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절차 / 33

1.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 34
2. 사업비 부정사용 등 신고 및 처리절차 ····· 35

부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38
2. 학술진흥법 시행령(연구윤리 관련 발췌) ····· 50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윤리 관련 발췌) ····· 58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연구윤리 관련 발췌) ···· 62
5.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 68
6. 연구윤리 준수 자가 체크리스트 ····· 72
7. 연구비 사용 변경 사항 ····· 76

머리말

한국연구재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919건, 그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판정 건수는 41건입니다.

연구자분들의 연구윤리 인식의 증가로 매년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적은 수라고 볼 순 없습니다.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건강한 연구문화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와 참고 사례 등을 모아 <2021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례집은 재단 전체 사업 중에서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를 주 대상으로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참고 사례를 선별·제시하여 연구소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관계자를 위한 특화된 내용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 소개를 통해 연구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동 사례집이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연구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이 강 재

제 1 장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사례

1. 논문 표절
2. 부당한 저자표시
3. 부당한 중복게재

1장 •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사례

1. 논문 표절(1)

주요내용

- ○○대학 □□연구단에서 제출한 사회과학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의 최종연구결과물 중 △논문(제1저자: 공동연구원 A교수, 제2저자: 공동연구원 B교수)에 대하여 논문이 게재된 학회로 표절 의문 제보 접수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논문내용 일부를 인용 표기 없이 표절함

판정

- 피신고자(제1저자) 소속 ○○대학 연구윤리진실성 본조사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부 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항'표절'에 해당

  ➡ **판정이유:** A대학 연구윤리진실성 본조사위원회 출석위원 5명 전원이 표절 중 "내용표절, 말바꿔쓰기 표절, 짜깁기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공동연구원 A, B교수)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이 발생한 당해 사업년도에 A, B교수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 전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1. 논문 표절(2)

주요내용

- ○○대학 □□연구소에서 제출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의 최종연구결과물 중 △논문(제1저자: 연구책임자 A교수, 교신저자: 전임연구원 B박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논문 표절 의혹 접수

  ➡ **신고내용:** 국립대 교수들의 논문 표절에 의한 예산 편취 의혹

  ※ 석박사 과정 졸업생들이 이미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베껴 사용

  ※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를 공동저자로 등록

판정

- ○○대학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결과,『○○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3호 '표절'에 해당

  ➡ **판정이유:** 해당 논문은 표절 대상 논문과 서론, 연구방법, 데이터, 연구결과 등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함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연구책임자 A교수, 전임연구원 B박사)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이 발생한 당해 사업년도에 A교수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 전액 및 B박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25%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1. 논문 표절(3)

주요내용

- ○○대학 □□연구소에서 제출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물 중 △논문(제1저자: 전임연구원 A박사, 참여저자: B교수)에 대하여 논문이 게재된 학회로 표절 의문 제보 접수
  - ➡ **신고내용:** 타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윤리 위반

판정

- 학회 및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결과, 참여저자 B교수가 집필한 부분이 교육부 훈령 제153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항'표절'에 해당
  - ➡ **판정이유:** 제소자가 언급한 논문과 문장 및 인용문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문장에 인용표시가 없고, 참고문헌도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문장과 문맥의 동일성에서 표절에 해당됨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전임연구원 A박사)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발생 당해연도 중 제재조치 처분 대상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의 약 1개월 분 급여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1. 논문 표절(4)

주요내용

- ○○대학 □□연구소에서 제출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물 중 △논문에 대하여 재단으로 연구부정행위(표절) 의혹 제보 접수
  - ➡ **신고내용:** 타 연구자의 발표문을 인용표기 없이 표절하여 연구윤리 위반

판정

- 소속기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결과, 연구책임자 A박사가 집필한 부분이 교육부 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항'표절'에 해당
  - ➡ **판정이유:** 연구책임자 A박사가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인용 표시 없이 의혹 발표문의 내용을 상당부분 옮긴 것이 확인 되고, 의혹 발표문과 유사하게 논문의 논지가 전개되므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표절로 판정함.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연구책임자 A박사)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이 발생한 연도부터 해당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지급된 학술활동수당 전액과 연구윤리 부정 대상 논문에 지급된 논문게재료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2.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1)

주요내용

- ○○대학 □□연구소의 A교수가 인문분야 연구소지원사업 수행 중 제출한 연구업적(논문 총 3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접수
  - ➡ 보도내용: A교수는 학생 장학금과 사업 연구비를 유용했으며, 제자의 논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제1저자로 등록

판정

- ○○대학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결과, 연구업적 3편 모두 교육부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4항'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
  - ➡ 제1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역할 이외에 논문의 기여가 미미한 피조사자가 제1저자로 표기, 제2와 제3논문의 경우, 기초적인 교신역할 이상의 기여를 하지 않은 피조사자가 교신저자로 게재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일반연구원 A교수)
- 행정처분: 해당 연구자 소속 연구소에 대하여 '주의'처분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이 발생한 당해 사업년도에 A교수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 전액 및 논문게재료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2.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2)

주요내용

- ○○대학 □□연구소의 A교수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지원사업 수행 중 제출한 △논문(교신저자: 연구책임자 A교수, 제1저자: 전임연구원 B박사)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접수(재단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 민원내용: A교수는 제보자의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강요에 의해 저자로 표시

판정

- ○○대학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결과, 교육부 훈령 제60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4항'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
  - ➡ 피조사자는 교신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연구 책임교수로서 당연히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해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함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연구책임자 A교수)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지급된 정부출연금 중 제재대상자에게 지급된 학술활동수당 전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3. 부당한 중복게재(1)

주요내용

- ○○대학 □□연구소의 A교수가 인문분야 연구소지원사업 수행 중 제출한 논문에 대하여 ○○대학으로 표절 의문 제보 이메일 접수

판정

-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항 '표절' 및 제5항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참여연구원 A교수)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이 발생한 당해 사업년도에 A교수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 전액 및 논문 게재를 이유로 지급된 인센티브 총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3. 부당한 중복게재(2)

주요내용

- ○○대학 □□연구소의 A교수가 인문분야 연구소지원사업 수행 중 제출한 △논문(저자: 일반연구원 A교수)에 대하여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로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중복게재) 제보 접수
  - 제보내용: A교수가 게재한 △논문과 ◇논문의 부당한 중복게재 의심

판정

- 학술지 발행 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심의 결과, '이중투고·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
  - ➡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를 활용하여 △논문과 ◇논문을 비교 검증한 결과, 전체 표절률은 40%로 집계됨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일반연구원 A교수)
-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이 발생한 당해 사업년도에 A교수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 전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1호 등

제 2 장
유형별 사업비 부정사용 사례

1. 사업비 횡령, 편취 또는 유용
2. 의도적인 사업비 부정 집행
3. 사업비 유용 및 부정 집행

2장 • 유형별 사업비 부정사용 사례

1. 사업비 횡령, 편취 또는 유용

주요내용

- 사업비 유용(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 ➡ 사회과학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단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실시
  - ➡ 공동연구원 A와 박사과정생 B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학생 C의 학생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연구비 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고 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용도 외로 부당 집행
  - ➡ 연구책임자 C교수는 공동연구원 등이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 및 협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선정·관리·감독 및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연구보조원 등에게 전달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를 집행

조치사항

- 연구과제: 협약 해약 통보 및 미사용 사업비 환수
- 참여제한: 5년(연구책임자 C교수)

  ※ 관련자 A, B, C에 대하여 추가 수사 진행 중
- 사업비 환수: 부적정 집행액 및 제재부가금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협약) 제5항, 학술진흥법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및 학술진흥법 제20조의 2(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_2016.8.4. 신설) 등

2. 의도적인 사업비 부정 집행(1)

주요내용

- 사업비 부적정 집행(자문활동수당 부정 지급)
  - ➡ 인문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소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실시(교육부)
  - ➡ □□연구소(연구책임자 A교수)는 세부사업과제의 자료집 발간을 위해 △△위원회 B연구원과 객원연구원 위촉계약(약 1년간 자문활동수당으로 매월 70만원 지급)을 체결
  - ➡ 위 계약체결 이전 B연구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인데도, 자문활동수당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 기간 전후로 총 6회에 걸쳐 자문활동수당 명목으로 합계 4,000,000원을 지급

조치사항

- 참여제한: 2년(연구책임자 A교수)
- 사업비 환수: 부적정 집행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3호 등

2. 의도적인 사업비 부정 집행(2)

주요내용

- 사업비 부적정 집행(여비, 회의비 등)
  - ➡ 인문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소(연구책임자 A교수)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핫라인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 대한 사업비 집행 정지 조치 후 사업 소관부서 주관으로 현장점검 실시
  - ➡ 신고인이 신고한 부적정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집행한 사업비 중 여비와 회의비 등의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

※ 해외여비 지급 시 숙박비, 식비 등 출장비 중복 계상 3건

※ 회의 참석자 허위 기재(회의참여자 강의시간 중복 및 해외출장 등) 12건

※ 불참 회의에 대한 회의비 집행 등 9건

조치사항

- 참여제한: 2년(연구책임자 A교수)
- 사업비 환수: 부적정 집행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3호 등

3. 사업비 유용 및 부정 집행(1)

주요내용

1) 사업비 유용(연구비 편취)

- 인문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소(現 연구책임자 A교수)에 대하여 연구비 편취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 실시
  - ➡ B, C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4개의 업체에게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업비를 선지급한 후, 일부는 물품으로 받고 잔금은 현금(계좌이체 또는 직접)으로 반환
  - ➡ 현금화된 사업비는 연구소 운영비(행정직원 격려금, 연구보조원 해외 연수 지원금 등)로 유용하였으며, 일부는 현금화된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행정직원이 사적으로 사용

2) 사업비 부적정 집행(기자재 구입 및 회의비 등)

- 해당 연구소의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사업 소관부서 주관으로 현장점검 실시
  - ➡ 사업계획에 작성되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 구입
  - ➡ 동일(근접)시간에 복수의 회의에 동일인의 회의 참여 등
  - ➡ 기타 회의비 목적 외 사용 등

조치사항

- 참여제한: 5년(前 연구책임자 B, C교수), 1년(現 연구책임자 A교수)
- 사업비 환수: 부적정 집행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3호 등

3. 사업비 유용 및 부정 집행(2)

주요내용

1) 사업비 유용(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소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실시
  - ➡ 연구책임자 A교수는 자신의 지도학생인 석·박사과정생 4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그중 B로 하여금 통장을 일괄 수거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게 함
  - ➡ B는 매월 학생인건비가 입금되면, 본인의 타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다시 학생들의 타계좌(인건비 지급 계좌와 상이)로 일부 금액을 재분배
  - ➡ 약 7개월 후 B는 인건비 공동관리 통장으로 활용되는 본인의 계좌에 축적된 금액 전체를 연구책임자 A교수에게 송금
  - ➡ 이후에도 연구책임자 A교수는 연구보조원 2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용역업체 C 대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

2) 사업비 부적정 집행(조사연구활동비 등)

- 연구책임자 A교수는 본인의 제자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2인을 조사연구활동비 지급 대상으로 등록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결과물은 연구보조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책임자 A교수는 조사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의 대부분을 연구보조원 B 및 용역업체 C대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

조치사항

- 연구과제: 협약 해약 통보 및 미사용 사업비 환수
- 참여제한: 5년(연구책임자 A교수)
- 사업비 환수: 부적정 집행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협약) 제5항,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3호 등

3. 사업비 유용 및 부정 집행(3)

주요내용

1) 사업비 유용(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소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실시
  - ➡ 연구책임자 A교수는 소속 학과 학생 2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해당 학생의 인건비 수급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본인이 관리
  - ➡ 참여연구원 B박사는 연구보조원 4명의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본인이 관리
  - ➡ 또한 A교수와 B박사는 협의 후, 다른 학생 1명의 인건비 수령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음

2) 사업비 부적정 집행(여비 등)

- 연구실 운영경비 마련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에 대하여 국내여비를 허위로 신청하게 하고, 허위서명 등을 하였음

조치사항

- 연구과제: 협약 해약 통보 및 미사용 사업비 환수
- 참여제한: 5년(연구책임자 A교수)

  ※ 00지방검찰청 공소에 따른 벌금형 확정
- 사업비 환수: 부적정 집행액

  ※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협약) 제5항,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3호 등

제 3 장
기타 연구윤리 위반의 개념 및 사례

1. 갑질의 개념 및 사례
2. 성비위의 범위 및 사례
3.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개념 및 사례
4. 성비위, 갑질 교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3장 • 기타 연구윤리 위반의 개념 및 사례

1. 갑질의 개념 및 사례

①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개념 정립 예정(국민권익위, '18.10.)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논문 도용, 사학비리 등 교육분야의 갑질은 통상 권력형 범죄의 양태를 보이며 발생

② A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사례

주요내용

1) 대학원생들의 교수자녀 연구과제 수행 및 입시자료 작성

-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였고,
  - ➡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자녀 B학생은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하였고, 실험이 진행 중인 동안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
- 이 실험에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B학생은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
-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는 논문작성을 지시하였고,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 동원되었으며, 동물실험에 사실상 참여한 바가 없는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것이 확인

2) 교수자녀의 봉사활동 대행 관련

- A교수는 자녀 B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입력, 책 1권)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하여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 B학생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각종 수상실적, 논문 등의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54시간)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학원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

3)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학술대회 발표자료 작성 관련

- A교수는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는 B학생(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하였고,
  - ➡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경력을 ◈◈대학교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하여 최종 합격한 사실이 확인

조치사항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포스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 동원하고, 자녀의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A교수에 대하여 해당 대학교에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 ➡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

- 자녀의 연구과제 관련 동물실험과 보고서, 논문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강요하고, 동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한 A교수를「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 ➡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하고, 고3 재학 중 발표한 논문도 대학원생들이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신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B학생을「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 ➡ C씨(A교수의 아들)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C씨를「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9.3.26.)

2. 성비위의 범위 및 사례

① 성비위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 강제추행 등의 성추행을 의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기타 성비위: 불륜 등 기타 부적절한 관계 등

② A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성비위 사례

주요내용

- ○○대학 여성단체에서 해당 대학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였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기하여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성비위 사건 및 피해신고 처리과정과 함께 학내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
- 피해자인 대학원생의 진술과 사건을 처리한 교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A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약 1년에 걸쳐 대학원생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조치사항

- A교수의 성비위는 당시 구(舊)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및 구(舊)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시효(당시 2년)가 도과되어 "경고"로 통보
- 아울러 A교수에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

- 또한, 당해 대학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
- 최근 정부는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8.6.26.)

③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비위 사례

주요내용

- ○○대학 A교수 등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대해 37명의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 실시
- B교수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 등의 성적 용어를 사용
- C교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함
- D교수는 회식자리에서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음
- E교수와 F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F교수는 B교수의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교육부는 B교수에 대해 파면 및 수사의뢰, C·D·E·F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고,
- ○○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였으며,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8.3.19.)

3.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개념 및 사례

①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개념

-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 ➡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 ➡ 미성년자가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당한 역할 및 기여가 제시되어야 함

② A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사례

주요내용

- ○○대학 A교수의 아들인 B군은 A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 43편에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등록
- 이 중 3편은 B군이 고등학교 시절 발표된 논문이며, 그 중 SCI급 논문 1편에는 제2저자로 등록
  - ➡ 제1저자와 나머지 공저자들은 모두 ○○대학 대학원생들이지만 B군은 유일하게 고등학교 학생이었음
- 이후 B군은 ○○대학 △△학부 및 동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꾸준히 A교수 연구실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음

조치사항

-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4항'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
  - ➡ B군이 고등학교 시절 발표된 논문은 관련 연구(실험)노트나 기록이 없어 신뢰성이 떨어짐
  - ➡ A교수는 B군이 공동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음
  - ➡ 논문을 투고할 때 초고 논문에는 없었던 B의 이름을 나중에 A교수가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 포착

4. 성비위, 갑질 교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안내

-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실시 ('19년 협약체결 과제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중단 및 향후 1년 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

  ➡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 추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2018.7.17. 개정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절차

1.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2. 사업비 부정사용 등 신고 및 처리절차

4장 • 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절차

1.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내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신고방법: 온라인/이메일/우편신고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고객공간 → 신고 및 접수 → 연구부정행위 신고

➡ 실명신고 시,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 익명신고 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2항, 제19조(예비조사) 4항 관련

신고 및 판정절차

① 신고 접수	② 검증 여부 확정	③ 검증 이첩	④ 검증 실시
-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 검증기관에 이첩	- 예비조사 → 본조사

⑤ 판정 및 통보	⑥ 이의신청	⑦ 이의신청 처리	⑧ 조사결과 제출
- 판정 후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판정 불복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및 연구재단에 제출

처리절차

소관 부서 이관	제재조치 평가단(재단)	제재조치 통보(교육부)
- 판정결과 접수 및 이관 ※ 윤리법무팀 → 소관 부서	- 제재조치 심의 및 의결 - 심의결과 부처 보고	- 참여제한 및 환수 알림 - 이의제기 접수 ※ 이의제기 미제출 시 확정

2. 사업비 부정사용 등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내용

➡ 사업비 부정행위, 연구수행·운영비리 등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

※ 사업비 부정행위: 연구(사업)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할 연구비 관리 주체(연구기관장, 연구비관리자, 회계감사부서장, 연구책임자 등)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방법

➡ **온라인/이메일/우편신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고객공간 → 신고 및 접수 → 감사실 핫라인

※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나, 근거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음해·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처리하지 않음

신고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신고 접수 (감사실 핫라인)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신고내용 검토 및 조사여부 확정, 통지)	**조사** (철저한 조사)	**결과통보** (제보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처리절차

소관 부서 이관	제재조치 평가단(재단)	제재조치 통보(교육부)
- 판정결과 접수 및 이관 ※ 감사실 → 소관 부서	- 제재조치 심의 및 의결 - 심의결과 부처 보고	- 참여제한 및 환수 알림 - 이의제기 접수 ※ 이의제기 미제출 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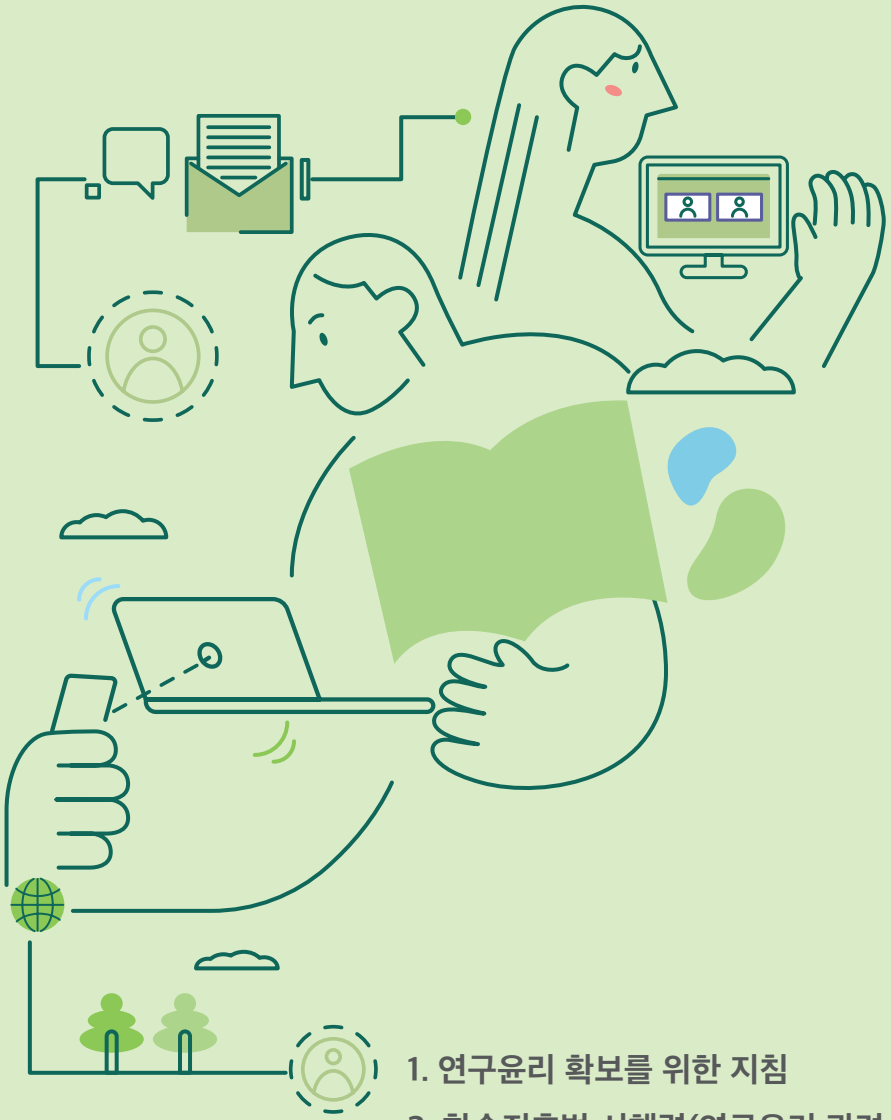

부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 학술진흥법 시행령(연구윤리 관련 발췌)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윤리 관련 발췌)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연구윤리 관련 발췌)
5.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6. 연구윤리 준수 자가 체크리스트
7. 연구비 사용 변경 사항

부록1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60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3호, 2015. 11.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3호, 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부록2 • 학술진흥법 시행령(연구윤리 관련 발췌)

[시행 2019.10.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 · 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 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16. 8. 2.]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8. 2.]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 · 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700만원
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 · 진술 ·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9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000만원

부록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윤리 관련 발췌)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4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 변조 ·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 조치 · 보고의 내용 ·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 ·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연구윤리 관련 발췌)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4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 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 · 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 · 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 · 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 · 추가 · 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 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 · 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 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 연구 · 증언 · 진술 ·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 연구 ·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기피(忌避)신청을할수있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 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 · 평가연구 또는 시험 · 검사 ·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제65조(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 ·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부록5 •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_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2014.9)]

1.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사례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시간외수당 부당각출 지시
- 부당한 명절선물 구입 및 제공 지시의 수행
-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친족의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 용역사업 수행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처 특혜 채용

③ 특혜의 배제

-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 평정표 조작을 통한 부정채용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법인카드로 업무 관계자들에게 선물 제공
-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 업무추진비로 선물구입 및 축하금 지출
-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승진인사 청탁
- 대학교수 임용 인사 청탁

2. 부당이득 수수금지 위반 사례

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력산정 특혜 제공
- 지자체 재산관리담당의 이권 개입
- 학교장의 부당한 해외연수 대상자 모집 행위
- 사적 목적을 위한 직원 동원
- 지인에게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 제공

②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 국립대학교 교수의 소속기관 명칭 사적 사용
- 기관명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제공

③ 알선·청탁 등의 금지

-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 거론

④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법원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재산상 투자행위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 지자체 재산관리담당의 이권 개입
-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 정보 부당 제공

⑤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

- 개인차량에 방역 작업용 휘발유 주유
- 업무와 무관한 데이터 통화 사적 사용·수익
- 용도 폐기 관청 관사를 주거 사용 및 임대 활용
- 공용핸드폰 부정개통 및 사용

⑥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자택에 택배로 배달된 촌지 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핸드폰 배터리 수수
- 본부 체육행사에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수수
- 공무원인 아내를 통한 인사 대가 금품 수수
- 간부공무원의 산하재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
- 급식납품업체로부터 백화점상품권 수수
-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 금품 및 향응 요구
- 공사 직원의 과다한 기념품 수수
- 산하단체로부터의 관행적 표창 및 금품 수수
- 직무관련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⑦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직유관단체 원장의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
-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

3.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사례

①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고액 강의료 수수 후 미신고
-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신고 누락
-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외부강의 미신고

②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 차용
-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③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 대리통지 행위 등
- 직무관련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
-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부록6 • 연구윤리 준수 자가 체크리스트

[출처: 한국연구재단_신진연구자를 위한 가이드북(2019.11.21.)

1. 연구부정행위 자가 체크리스트

구분	세부	내용	예	아니요
위조	(1)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변조	(1)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표절	(1)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2)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용어, 문장, 표현, 그림, 표, 사진, 영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3)	타인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풀어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4)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를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5)	2차 문헌을 활용하면서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해서만 출처를 표기한 적이 없는가?		
	(6)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 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7)	타인의 저작물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였는가?		
	(8)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적절한 인용 표기를 했는가?		

구분	세부	내용	예	아니요
부당한 저자표기	(1)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2)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저자의 자격을 제외하였는가?		
	(3)	저자들의 표기 순서와 연구 기여도가 일치하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1)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2)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3)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연구 부정행위 조사방해	(1)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없었는가?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었는가?		

※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2. 연구결과 보고 및 확산 단계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유형	질문	예	아니요
연구 부정행위 여부	(1)	발표될 논문 원고에서 자신이 작성한 부분은 물론 공동연구자가 작성한 부분에서도 위조, 변조, 표절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저자의 자격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부당하게 저자에서 배제된 연구자는 없는가?		
	(2)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에 포함된 연구자는 없는가?		
저자의 유형과 순서	(1)	제1저자(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역할을 기여도에 맞게 부여하고 이에 합의하였는가?		
	(2)	저자들의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가 기여도에 맞게 부여되고, 이에 합의하였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1)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비교하여 가설,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이 양적·질적으로 유사한지 확인하였는가?		
	(2)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연구결과물을 하나의 논문으로만 발표하였는가?		
	(3)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일부 내용만 추가하거나 실험사례 수, 표본 수 등을 추가한 연구결과물을 발표한 일은 없는가?		
연구 주제의 타당성	(1)	본 연구가 해당 연구분야에서 학문적 의의는 물론 인류의 건강과 복지, 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2)	공동 연구자들과 공통적인 연구목적을 공유하고 있는가?		
	(3)	본 연구가 범죄나 사회문제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가?		
인간 대상연구	(1)	연구수행 전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간대상연구 관련 법령, 윤리 등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2)	피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3)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사항	유형	질문	예	아니요
동물 대상연구	(1)	연구수행 전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동물대상연구 관련 법령, 윤리 등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2)	동물권 보호, 동물 복지를 위한 대책이나 이에 대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가?		
	(3)	실험 후, 동물 처치 및 폐기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규정에 맞게 시행되었는가?		
이해상충 가능성 확인	(1)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을 정직하게 밝혔는가?		
	(2)	본 연구 결과가 특정 기업 또는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관련법령 준수확인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였는가?		
	(2)	IRB, IACUC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였는가?		
	(3)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관련 규칙 및 법령을 확인하고 준수하였는가?		

※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부록7 • 연구비 사용 변경 사항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_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6.)]

비목	구분	기존	변경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불명확	계상가능
학생 인건비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학생인건비 계상불가 (인건비 계상가능)
	연구기간 외 사용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출연연 및 특정연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
	다른 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학생인건비 계상불가 (인건비 계상가능)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시설장비도입	구입금액과 무관하게 계상가능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 및 ZEUS 시스템 등록
연구 재료비	재료비 구입기한	과제종료(연차)일까지 <일부부처는 과제종료 2개월 이전까지 제한>	최종(단계)종료일까지
연구 활동비	회의비 사용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가능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학회참가비 사용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계상가능
	특근매식비	규정이 없음	계상가능
	논문게재료 사용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가능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불가
	연구환경유지비	계상불가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후 가능)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계상불가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후 가능)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 시 집행불가	계상가능

비목	구분	기존	변경
연구 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가능)
	소프트웨어활용비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입증 시, 연구기간 초과되어도 집행가능
	국외출장	별도없음	국외출장비 지급 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수당	지급대상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가능 (학생연구자 제외)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지급가능 (단,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
	계상한도	1인당 월40만원 이내	1인당 월 40만원 이내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간접비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협약체결 시점 (당해연도별,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	연구개발과제(단계가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가능여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 (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연국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 (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1. (원칙)5% 2.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 및 중견기업은 10% 계상가능	10%
	간접비 기관단위관리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만 근거 존재	1.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2. (영리기관) 불가
	사용제한	<신설>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불가
	간접비 회수	<신설>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2021년도 연구 현장의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

2021년 11월 20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2021년도 연구 현장의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042.869.6114
Fax.042.869.6777